

성희롱 · 성폭력 신고 사건 접수 및 처리 매뉴얼 및 서식

2024. 11. 12.



목원대학교
MOKWON UNIVERSITY

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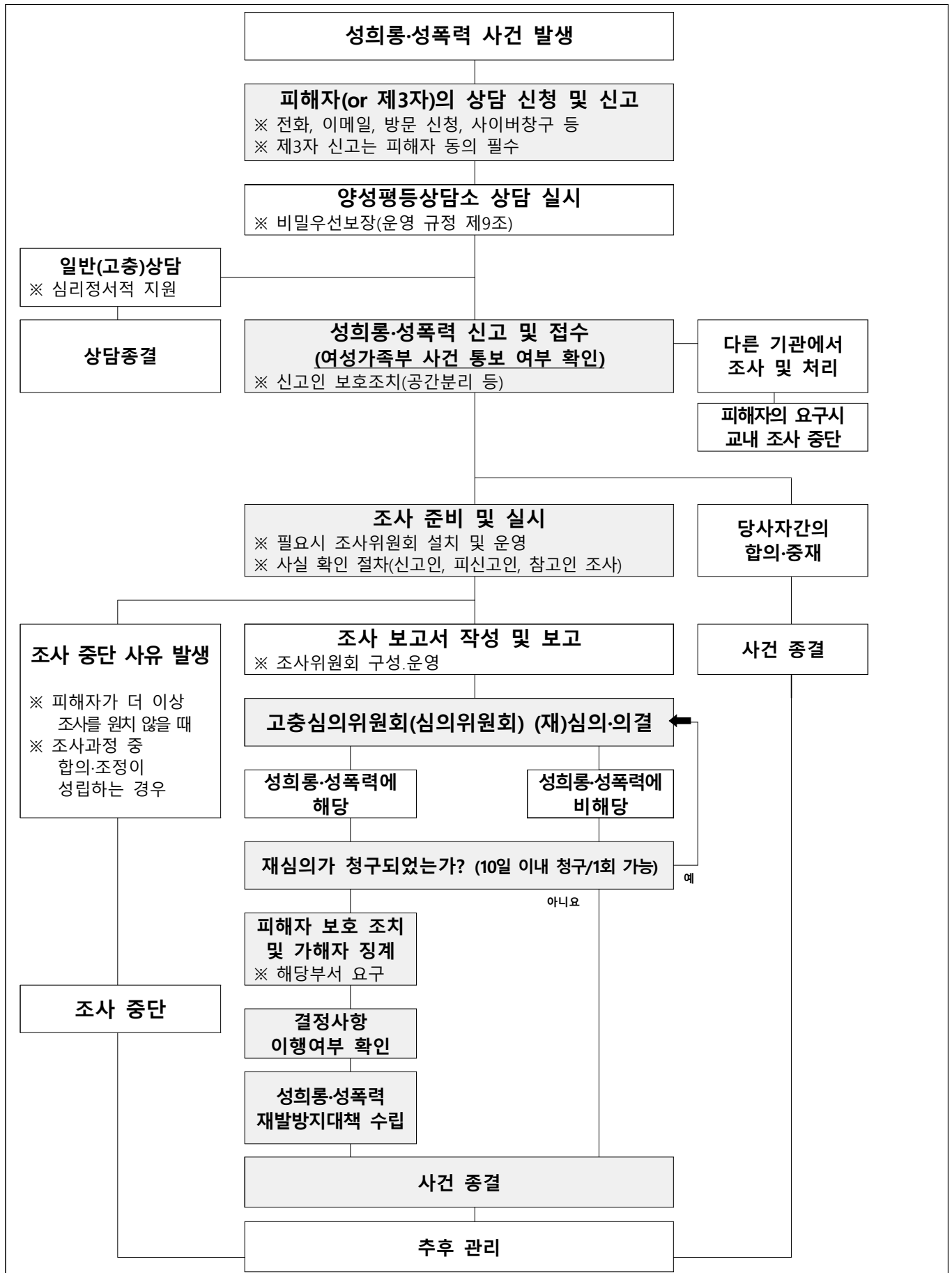
I. 관련 법적 근거 및 규정

-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(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)
-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(성희롱 방지조치 등)
-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(성폭력 예방교육 등)
-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(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)
- 목원대학교 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소 운영 규정

(규정 바로가기: https://rule.mokwon.ac.kr/lmxsrv/law/lawFullView.do?SEQ=499&SEQ_HISTORY=1334)

II.

사건 처리 절차도



Ⅲ. 상담 및 사건 처리 절차 안내

□ 성희롱 · 성폭력의 정의

- “성희롱”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,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,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됨.
 - 1.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(性的)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· 정신적 ·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(性的)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
 - 2.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업평가, 고용, 연구, 인사 또는 업무 참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
 - 3. 성별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
 - 4. 위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여 정신적 협박이나 물리적 강압 및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
- “성폭력”이란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행위.

□ 상담단계

- 양성평등상담소 상담은 고충상담과 신고 접수 상담으로 나뉘지며, 상담을 희망하는 대학 구성원은 양성평등상담소 전화, 이메일, 방문 신청, 사이버창구 등을 통해 신청가능함.
- 고충상담은 피해자가 신고 접수를 통하여 사건이 처리되는 것을 원

치 않고 상담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경우로, 일반상담으로 진행되며, 신고 접수와 함께 이루어질 수 없음.

※ 신고 접수가 진행 중인 경우, 상담 요청시 타 기관 연계

- 상담 신청 접수 ➡ 상담 실시 ➡ 다양한 사건 해결 방식 안내
- 상담의 비밀 유지: 상담 내용은 비밀 유지가 원칙. 단, 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이유로 예외 적용될 수 있음. 신고 접수 후 조사 진행 시 상담 내용 및 피해 사실은 인권센터 업무 관련자에게 공유될 수 있음. 상담 중 위험이 관찰될 시 신청서에 기재된 보호자 연락처로 연락을 취할 수 있음.
- 상담은 피해자 당사자 외에 사건을 목격하거나, 알고 있는 제3자도 가능하나, 사건 신고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제3자가 가능함.

□ 사건 신고 및 접수 단계

- 상담 후 피해당사자나 제3자 등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양성평등상담소에서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확인하고 신고 접수하는 과정.
- 신고 관련 서류 작성: 신고서와 진술서, 신고인 서약서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
- 관련 자료 제출: 사건 관련 증거나 증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 제출 가능
- 제3자가 신고하거나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고 및 조사 의향이 있어야 신고 절차 진행 가능.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, 피신고인이 특정될 수 없거나 당사자들의 조사 거부 및 회피 등 사정으로 인하여 조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고를 각하할 수도 있음.

□ 조사 단계

- 조사는 성희롱·성폭력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(사실관계)를 확인하는 과정. 육하원칙에 의한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피해의 정도, 구조적 문제, 공동체적 책임을 확인. 양 당사자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게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 진행.
- 조사를 개시하면 사건 당사자들의 면담, 진술서, 자료 제출 및 참고인(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,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은 사람, 기타 당사자가 참고인으로 요청하는 사람) 조사 등을 진행함.
- 사건 조사는 출석을 요구하여 대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. 이 과정에서 당사자는 조사 내용 등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.
- 조사 중지 사유 발생: 목원대학교 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소 운영 규정 제13조(회의 및 조사) 제4항에 의거하여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,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음.

□ 심의 단계

-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성희롱·성폭력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, 그 행위의 심각성과 피해 범위와 영향을 고려하여 사건 해결에 필요한 조치를 심의 의결. 피신고인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처분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회복이나 보호조치,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논의함.
- 규정에 따라 고충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 후 결과를 통보함. 사건 당사자는 해당 심의 절차에 출석할 수 있고, 진술권을 보장받을 수 있음.

- 재심의 신청: 목원대학교 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소 운영 규정 제24조(재심의)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때, 사건당사자는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회의 재심의 신청 가능. 불복을 신청할 만한 추가 자료 제출.

□ 사후 관리

- 사후 관리는 최종 심의 후, 심의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모든 조치를 말함. 심의 결과가 유지되었을 경우 관계 부서에 징계 요구, 권고, 조치 등을 통보하고, 피해자가 피해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.

□ 신고인, 피신고인, 참고인의 권리와 역할

- 발언할 권리: 사건을 신고할 권리, 평가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, 해결 방법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권리, 의사결정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- 공정하게 대우받을 권리: 사실관계 조사 과정에서 공정하게 대우받을 권리, 사건 평가 이전에 선 규정을 당하지 않을 권리
- 2차 피해에서 안전할 권리: 위협이나 괴롭힘, 사적 보복 및 기타 통제되지 않은 신체적·언어적·상황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, 사건의 왜곡이나 왜곡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을 권리,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에서 보호받을 권리, 필요 이상의 고통을 주는 요구나 질문을 거부할 권리, 사건 해결의 전 과정에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고통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할 권리
- 조력을 구할 권리: 당사자들의 신상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한에서 사건에 대해 자문을 구할 권리
- 피해회복 및 지원을 요청할 권리: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적, 심리적 지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권리

참고문헌

- 목원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상담소(2024), 인권침해 신고 사건 접수 및 처리 매뉴얼 및 서식
- 충북대학교 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소(2021),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사건처리 업무 매뉴얼

IV. 신고 서식

- ☐ 불임1 신고서
- ☐ 불임2 신고인(피해자) 서약서
- ☐ 불임3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에 관한 동의서
- ☐ 불임4 진술서

붙임1

신 고 서

접수일자 : 20 . . .
사건번호 : 20 -

접수자 : _____

1. 신고 당사자의 경우

신 고 인	이름		성별		내국인 ☐ 외국인 ☐
	소속		학번 또는 직급		
	전화번호		이메일		

2. 신고인이 제3자인 경우

*[신고인과 피해자가 다를 경우] 신고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습니까? 예☐ 아니오☐

신 고 인	이름		성별		내국인 ☐ 외국인 ☐
	소속		학번 또는 직급		
	전화번호		이메일		
피 해 자	이름		성별		내국인 ☐ 외국인 ☐
	소속		학번 또는 직급		
	전화번호		이메일		

3. 피신고인

피 신 고 인	이름		성별		내국인 ☐ 외국인 ☐
	소속		학번 또는 직급		
	전화번호		이메일		
	피해자와의 관계	아는 사람	☐ 동료 ☐ 선배 ☐ 후배 ☐ 연인 ☐ 교수 ☐ 제자 ☐ 상사 ☐ 부하 ☐ 기타 ()		
모르는 사람		☐ 학내관계 있음 ☐ 학내관계 없음			

* 사건 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(피신고인에 관한 정보 등)

신고 요지	※ 사건에 대해 6하원칙하에 핵심만 요약 하여 기재 바랍니다. 본 내용은 피신고인 조사개시 알림으로 안내됩니다.

*중복체크가 가능합니다. 해당란에 모두 표시해주세요.

1. 피해유형 : 언어적 괴롭힘 ☐ 신체적 접촉 ☐ 학업·업무상의 차별 ☐ 스토킹 ☐
기타 ☐ _____

2. 피해 발생 횟수 및 기간

발생 횟수 : 일회성 ☐ 반복성 ☐

최초 발생일: _____ 최근 발생일: _____

3. 피해 발생에 대해 피해자가 취한 반응 및 행동

-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음 ☐
- 말로 거부 의사를 나타내었음 ☐
- 행동으로 거부 의사를 나타내었음 ☐
- 제 3자를 통해 문제를 제기함 ☐
- 변호사·경찰의 도움을 구함 ☐
- 기타(구체적으로): _____

4.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피신고인의 행동 변화 : 중지 ☐ 감소 ☐ 변함없음 ☐ 증가 ☐
기타 ☐ _____

5. 희망 조처 사항 : 규정에 따른 처벌 ☐ 사과 및 중재 ☐ 교육을 통한 재발방지 ☐ 공간분리 ☐
기타 ☐ _____

6. 기타 하고 싶은 말 :

신고인은 20 년 월 일자로 신고하며,
목원대학교 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소 규정에 따른 조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.

신고인 _____ (서명 또는 인)

목원대학교 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소 귀중

서 약 서

1. 당사자의 권리

- ① 당사자는 조사·고충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. 이때 목원대학교 인권센터 양 성평등상담소에 사전에 통지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여 함께 출석할 수 있습니다.
- ② 당사자는 자료(진술서, 진단서, 전문가 소견서, 제반 증거자료 등)를 조사·고충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③ 한국어 구사가 능통치 못한 외국인의 경우 통역인을 동반할 수 있고, 기타 사정으로 구두진술 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제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.
- ④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 밖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양성평등상담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⑤ 누구든지 신고, 진술, 증언, 자료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, 전보, 징계, 부당한 대우,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.

1. 당사자의 의무

- ① 양성평등상담소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듣거나, 진술서와 자료 제출요구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. 당사자는 양성평등상담소의 **조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.**
- ② 당사자는 사건 내용 및 당사자나 관계인의 개인정보(이름, 연락처, 소속 등)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. 단, 당사자가 대리인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사건 내용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에 양성평등상담소의 허가를 받고 그 사람에게 비밀 유지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. 이 경우에도 절대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지 않아야 합니다(대리인 등이 이를 누설했을 경우 당사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합니 다.).
- ③ 당사자는 조사기간 중 상대방 당사자나 관계인을 사적으로 접촉할 수 없습니다.
- ④ 당사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 당사자나 관계인에 대하여 위협, 폭행, 학업평가 및 교육, 연구, 인사, 업무, 고용상의 불이익 처분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

본인은 위 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서명합니다.

년 월 일

성명 _____ (인 또는 서명)

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

목원대학교 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소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, 제17조(개인정보의 제공), 제18조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·제공 제한)에 의거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. 사건의 원활한 상담, 조사, 처리를 위하여 귀하가 서면 기타의 방법으로 제출한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할 수 있으며, 위 목적 외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. 귀하는 위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다만,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상담, 조사, 처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본인은 위 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서명합니다.

☐ 동의함

☐ 동의하지 않음

년 월 일

성명 _____ (인 또는 서명)

목원대학교 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소 귀중

붙임4

진 술 서			
성명	(서명 또는 인)	생년월일	
소속			
주소			
대상자 분류	신고인 / 행위자(피신고인) / 제3자		
전화번호		E-mail	
본인은 20 . . . 목원대학교 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소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서면 진술합니다.			
위 내용은 거짓이 없음을 진술합니다.		성명 _____(서명 또는 인)	

년 월 일

목원대학교 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소 귀중